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가단10258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중
담당변호사 채형석
변 론 종 결 2024. 3. 14.
판 결 선 고 2024. 4. 18.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9. 8. 2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6,390,15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390,1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

- (1) 주식회사 D은 2012. 12. 8. C에게 3,500,000원을 이자 및 연체이율 연 38.9%, 대출기간 60개월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C이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 (2) 주식회사 D은 2015. 2. 16.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한 후 2015. 4. 14. C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다.
- (3) 그 후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474357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1. 12.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6,364,635원 및 그 중 3,406,106원에 대하여 2015.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8.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4) 원고의 위 양수금 채권은 2023. 1. 9. 현재 원리금 합계 16,390,155원 및 그 중 3,406,106원에 대하여 2023.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8.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다.

나. 피고와 C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 (1) 피고, C 및 E는 부(父) F(이하 ‘망인’이라 한다) 및 모(母) G의 자녀들로서, 망인이 2003. 11. 16. 사망하자, 망인의 처인 G가 3/9 지분의 비율로, 피고, C 및 E가 각 2/9 지분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각 공동 상속하였다. 그 후 위 G도 2012. 11. 2. 사망하여 피고, C 및 E가 각 1/3 지분의 비율로 G의 재산을 공동 상속함으로써, 결국 망인의 재산은 피고, C 및 E가 각 1/3 지분의 비율로 공동 상속하였다.
- (2)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2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인 소유의

상속재산이었는데, 망인이 2003. 11. 16. 사망하고, 그 후 망인의 처 G도 2012. 11. 2. 사망하자, 피고, C 및 E는 2018. 8. 20.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22.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¹⁾).

(3) 그 후 2019. 9. 20. 이 사건 1, 2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H 명의의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채권최고액 30,000,000원)가 말소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I조합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채권최고액 26,000,000원) 및 지상권 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가 2020. 11. 24. 말소되었으며, 같은 날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J조합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채권최고액 36,000,000원)가 마쳐졌다.

다. C의 채무초과상태

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인 2018. 8. 20. 원고에 대한 위 양수금 채무를 비롯하여 K카드, L단체, 등에 대한 채무로 원금 합계 12,692,1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유일한 부동산이자 상속재산인 이 사건 1, 2 부동산에 대한 1/3 지분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M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대법원 등기정보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1, 2 부동산의 1/3 지분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위 사해행위 이후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하여 기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이상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양수금 채권액 상당의 가액배상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다만, 이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다면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9982 판결 등 참조),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 및 수익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참조), 특별수익자인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그 재산분할결과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C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받은 1/3의 지분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 4, 5,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N조합 O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02. 11. 27. P에게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천시 Q 답 1,648㎡, R 답 783㎡를 매도한 후 같은 날 P로부터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 중 20,000,000원을 C에게 지급한 사실, 망인이 2003. 11. 16.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1, 2 부동산의 당시 시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2017. 1. 1.2) 당시 사건 1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는 15,147,000원(=165㎡×91,800원), 이 사건 2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는 29,463,500원(=605㎡×48,700원)이었던 사실,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하여 2002. 4. 19. 설정된 H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망인 사망 당시 약 12,000,00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생전에 C에게 지급한 금원 합계 20,000,000원은 그 액수, 지급 시점, C의 채무상태 등에 비추어 망인이 C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C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면 망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이 사건 1, 2 부동산의 가액 합계 44,610,500원(=15,147,000원+29,463,500원)에서 H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2,610,500원(=44,610,500원-12,000,000원)과 C에 대한 생전증여 가액 20,000,000원을 합산한 52,610,500원(=32,610,500원+20,000,000원)에 C의 법정상속분 1/3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 가액 17,536,833원(=52,610,500원×1/3,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린다)에서 C의 수증재산인 20,000,000원을 공제하면 결과적으로 C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은 없게 되므로, C이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해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C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는 이상, 원고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철환

별지

부동산 목록			
1. 경기도 이천시		대 165㎡	
2. 경기도 이천시		전 605㎡	끝

- 1) 등기부상 등기원인은 망인이 사망한 '2003. 11.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등재되어 있다.
- 2) 을 제5호증의 1, 2(토지대장)에 나타난 개별공시지가 중 망인이 사망한 2003. 11. 16.에 가장 근접한 시점이다.